

서울특별시교육청 국제교류협력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

의안 번호	관련 3302
----------	------------

제안연월일 : 2026년 3월 10일
제안자 : 교육위원장

1. 수정이유

- 교육감의 책무에 대한 내용은 제4조(교육감의 책무)에서 규정하고 있으므로, 동 개정조례안 안 제6조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은 중복 규정으로서 입법구조상 비효율적이라 판단됨.
- 따라서 안 제6조를 삭제하고자 함.

2. 주요내용

- 안 제6조를 삭제함.

3. 참고사항 : 없음.

서울특별시조례 제 호

서울특별시교육청 국제교류협력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

서울특별시교육청 국제교류협력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일부를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.

안 제6조를 삭제한다.

서울특별시교육청 국제교류협력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수정안 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	수 정 안
<p>제6조(국제교류협력 사업) (생략)</p> <p style="text-align: right;"><u><신 설></u></p> <p style="text-align: right;"><u><신 설></u></p>	<p>제6조(국제교류협력 사업) ① (현행 제목 외의 부분과 같음)</p> <p>② <u>교육감은 제1항의 국제교류협력 사업이 지속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관리하여야 한다.</u></p> <p>③ <u>교육감은 예산의 범위에서 상호교류 증진과 교육 지원을 위한 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.</u></p>	<p>제6조(국제교류협력 사업) (현행과 같음)</p> <p style="text-align: right;"><u><삭 제></u></p> <p style="text-align: right;"><u><삭 제></u></p>

서울특별시교육청 국제교류협력 활성화 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서울특별시교육청 국제교류협력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조제2호 중 “체결”을 “체결, 교육 지원 및 교류사업”으로 한다.

제6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제6조의2(국제교류협력 대상 검토 및 선정) 교육감은 제6조의 국제교류협력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사전에 충분한 검토를 통해 대상을 선정하여야 한다.

1. 상호 신뢰성
2. 지속적인 교류 가능성
3. 면적, 인구 및 행정·재정 수준 등 지역의 교류 여건
4. 상호 대등한 입장에서의 협력 및 우호 증진 가능성
5. 역사적·문화적 배경이나 지리적 특수성을 감안한 교류의 필요성
6. 그 밖에 국제교류협력을 통한 실익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p>제2조(정의)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.</p> <p>1. (생 략)</p> <p>2. “국제교류협력”이란 외국의 지방자치단체 및 교육관련 기관과의 자매결연 및 업무협약 체결, 국제행사의 유치·개최 등의 활동을 말한다.</p> <p>3.·4. (생 략)</p> <p><u><신 설></u></p>	<p>제2조(정의) ----- -----.</p> <p>1. (현행과 같음)</p> <p>2. ----- ----- ----- <u>체결, 교육 지원 및 교류 사업</u>-----.</p> <p>3.·4. (현행과 같음)</p> <p><u>제6조의2(국제교류협력 대상 검토 및 선정) 교육감은 제6조의 국제교류협력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사전에 충분한 검토를 통해 대상을 선정하여야 한다.</u></p> <p><u>1. 상호 신뢰성</u></p> <p><u>2. 지속적인 교류 가능성</u></p> <p><u>3. 면적, 인구 및 행정·재정 수준 등 지역의 교류 여건</u></p> <p><u>4. 상호 대등한 입장에서의 협력 및 우호 증진 가능성</u></p> <p><u>5. 역사적·문화적 배경이나 지리적 특수성을 감안한 교류의 필요성</u></p> <p><u>6. 그 밖에 국제교류협력을 통한 실익</u></p>